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30536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민호

변론 종결 2020. 10. 15

판결 선고 2021. 1. 14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부산 영도구 D 대 132㎡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12,55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5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8. C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13. 1. 3.경부터 2016.12. 2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합계 3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은 2017. 7. 18. C에 대한 3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C은 같은 날인 2017. 7. 18. 원고에 대한 차용금 100, 000, 000원과 원고가 C으로부터 양도받은 차용금 340, 000, 000원의 합계 440,000,000원을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고, 아울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7. 10. 23. F에 대한 2013. 6. 12.자 차용금 148,000,000원의 대물변제조 로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의 아들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0.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1,889,051,073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3,122,666,189원에 달하여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1. 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27,1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 계약 체결이 후 말소되었다.

이사건 변론 종결 무렵 위 부동산의 가액은 139,6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6호증, 을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440,000,000원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F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거나 그 부족상태를 심화시 키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인정된다.

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매매계 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가액 139,656,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 무액 27,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2,556,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 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과 C 사이에 2017 . 10.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112,55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112,5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이 다.2) 신용보증기금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2893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 었으므로, 피고는 이중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수 없다.

#### 나. 판단

1)위 가. 1)항 주장에 대하여을 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하여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 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 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 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정창근